

충청북도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도세과세
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(안)

심사보고서

1991. 12. 30.

내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1991년 12월 21일

○ 회부일자 : 1991년 12월 23일

다. 상정일자 : 제74회 정기회

○ 제6차 내무위원회(1991. 12. 27) 상정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재무국장 유의재)

가. 제안이유

○ 적용시한 만료(1991. 12. 31)에 따른 시한연장임.

○ 목적 : 무적차량 방지와 중고자동차 거래질서 확립

나. 주요골자

○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매매를 위하여 취득하는 중고자동차는 취득세, 면허세

면제

○ 매매용 중고동차 등록세 경감 : 1000분의 50 ⇒ 1000분의 10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(전문위원 민귀식)

- 자동차관리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법 허가를 받은 자가 매매에 공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한 도세면제 및 불균일과세를 하고 있으나 시행기간이 199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시행기간을 연장개정하는 것으로 중고자동차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무적차량 방지로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충청북도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용중고자동차에 대한 도세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를 개정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해당사항 없음.

5. 토론요지 : 해당사항 없음.

6. 심사결과 : 도 원안대로 의결(참석7인, 찬성7인)

7. 소수의견요지 : 해당사항 없음.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사항 없음.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용중고자동차에 대한 도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개정조례안